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전주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김선문
전화 063-259-4308 / 팩스 0502-193-8088

보도자료

2024. 3. 15.(금)

제 목

고수익 보장 주식투자자문을 빙자하여 서민들을 올린 불법 리딩방 사기 엄단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
- 전주지방검찰청 형사1부(부장검사 원형문)는 오늘(3. 15.) ‘400% 누적수익률 및 환불 보장’, ‘고수익 보장 스팩(SPAC)주 엄선 추천’을 내세우며 피해자 46명으로부터 리딩방 가입비 및 스팩주 투자금 명목으로 약 22억 원을 편취한 무등록 투자자문업체 대표, 이사 등 3명을 검찰에서 직접 구속 기소하고, 직원 2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
- 검찰은 무등록 투자자문업체의 대표 및 영업직원의 개별 사기범행으로 불구속 송치된 35건을 전면 재수사하여,
 - 투자유치 방법을 설계한 대표의 총괄 지휘에 따라 운용부·본부·영업부·지점 등 체계를 갖추어 계획적·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임을 밝혀내고,
 - 범행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아 고소 및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총괄 이사 2명을 추가 입건하여 대표와 함께 총 3명을 구속하는 등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였으며,
 - 불법 리딩방 사기 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주요 임원 및 주식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영업직원들도 기소하는 등 엄단하였음
-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, 앞으로도 서민들을 현혹·기망하여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리딩방 사기 등 서민다중피해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음

1

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순번	피고인	직업	공소사실	처분
1	A (40세)	무등록 투자자문업체 G 대표	【사기, 자본시장법위반】 피고인들은 공모하여, - '20.3.~'22.7. 주식투자전문가를 사칭하며 '3개월~1년 내 주식 수익률 400% 미달 시 환불보장', '3개월 내 스펙주 100% 수익률 미달 시 전액환불' 등을 약속하여 총 4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회원가입비, 투자금 명목으로 약 22억 원을 편취하고, - 금융투자업 등록없이 회원들에게 일대일로 상담하여 투자자문업을 영위	구속 기소 (3. 15.)
2	B (44세)	무등록 투자자문업체 G 운용부 총괄이사		
3	C (37세)	무등록 투자자문업체 G 본부 총괄이사		
4	D (32세)	무등록 투자자문업체 G 전주지점 영업부 이사		불구속 기소 (3. 15.)
5	E (33세)	무등록 투자자문업체 G 전주지점 영업부 이사		
6	F (31세) 등 19명	무등록 투자자문업체 G 영업직원 등		

2

수사 경과

- '23. 10. ~ 12. 35건 불구속 송치 등 (피해자 46명, 피해금 22억 원)
 - '24. 1. 검찰, 대표 A 주거지 압수수색
 - '24. 2. 27. 검찰, 운용부·본부 총괄이사 B, C 구속
 - * 대표 A,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일 도주
 - '24. 3. 4. 검찰, 대표 A 지명수배 조치 등 추적 끝에 검거
 - '24. 3. 15. 검찰, 대표 등 3명 구속 기소, 직원 등 21명 불구속 기소
- ※ 단순 영업 종사자 20명은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

3

수사 결과 및 의의

① 검찰의 전면적 재수사를 통한 계획적·조직적 범행 구조 규명

- 본건은 주임검사가 유사투자자문업체 ‘G투자클럽’ 사기 관련 사건을 배당 받은 후, 해당 업체와 관련된 청내 사건 35건(피의자 44명)을 모두 재배당받아 전면 재수사하여 조직적 사기 범행의 전모를 규명 하였음
- 대표 A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, 약 9만 건에 이르는 디지털 포렌식 추출 파일을 분석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행 전면에 등장하지 않은 채 경찰 수사망에서 벗어나 있던 운용부 이사 B와 본부 이사 C가 관여된 사실을 확인하고 대표 A와 함께 직접 구속하고,
- 피고인들이 이용한 계좌의 3년간 거래 내역을 검찰 계좌분석시스템을 통해 분석하여 신규회원으로부터 받은 가입비 및 투자금으로 기존 회원에게 환불하는 ‘돌려막기’ 구조임을 확인함으로써 영업직원들의 개인적인 사기 범행으로 종결될 수도 있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냄

② G 투자클럽의 내부 운영 체계 및 편취 방법 확인

- 피고인들은 전국 6곳에 영업지점을 두고, ① 지점 내에 이사-지점장-팀장-과장 등 4단계의 직급체계를 갖추고, ② 영업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‘약정 수익률 미달 시 납부한 가입비·투자금을 전액 환불해 주겠다’라고 기망하여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등을 편취한 뒤, ③ 매출 수익을 나누어 가짐

G 투자클럽의 조직체계



- ① 대표 A는 '수익률 및 가입비·투자금 환불 보장 특별약관'을 설계·배포하는 등 범행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, ② 운영부 이사 B는 추천 주식 종목 선정, 영업 '스크립트' 제작 및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고객 DB를 수집하는 역할, ③ 본부 이사 C는 고객 DB를 영업직원에게 배포하는 역할, ④ 영업지점 이사 D, E는 지점의 영업직원 및 매출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음

G 투자클럽이 범행에 이용한 특별약관

◆약관내용

1. 12개월 이상 약정계약에 대해서 추천 드린 종목의 누적수익**400%**미달성 시 전액환불 해드립니다.
 *단 약정기간내에 누적수익을 **400%**달성시 해당날짜로 포트 종료되어 재계약 하셔야 합니다.

◆ 특별약관내용

- [] 운영부를 통해 추천한 스펙주 종목이 [] 계약서에 명시한 약정 기한 (= > 2022 년 02 월 16 일 부터 3개월 이내)까지 공시 미달성 시 최초 가입했던 기간은 무상처리가 되고, 회원은 보증금&증거금 및 최초 가입한 금액에서 기본 가입비와 최소비용을 제외한 유료서비스 결제 금액에 대한 부분을 환불한다.

- 대표 A를 비롯한 임원들의 지시를 받은 영업직원들은 아무런 전문성이 없음에도 '주식투자 전문가'를 사칭, 대표 A가 설계·제작한 특별약관을 이용하면서 일대일 투자자문을 빙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가입비·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음

- ✓ **피해자 김○○의 사례:** '고수익·전액 환불 보장' 영업에 속아 평생 모아둔 노후 자금 1억 8,500만 원을 편취당하고, 대출까지 받아 영업직원들의 자문에 따라 주식 투자하다가 빚더미에 앉게 된 사례
- ✓ **피해자 홍○○의 사례:** 주식투자 경험이 없던 주부가 우연히 받은 '주식 리딩 문자'에 속아 9차례에 걸쳐 가입비 명목으로 7,500만 원을 편취당하고, 가족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하다가 가정 파탄의 위기에 처한 사례

③ 주식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영업직원들도 엄단

- 최근 고수익을 미끼로 서민들을 유혹해 투자금 및 가입비를 가로채는 무등록 투자자문업체의 **불법 리딩방 사기 범죄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임**
 - * '23년 8월 금융감독원과 국가수사본부는 자본시장법 불법행위 대응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 후 무등록 투자자문업자의 자본시장 불법행위 등에 관하여 대대적인 수사 중에 있음
- 불법 주식 리딩을 통한 사기 범죄, 무등록 일대일 주식 투자자문 행위, 유사 업체를 전직하며 재범을 일삼는 영업직원들의 행태 등의 근절을 위해 주요 임원뿐만 아니라 **가담 정도 등에 따라 영업직원들까지 기소하여 엄단하였음**

4 향후 계획

- 앞으로도 검찰은 서민들을 현혹·기망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리딩방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하고,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서민다중피해범죄를 척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